

외국인의 은행계좌 개설 가이드라인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아래 서류 지참 후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 서류

01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여권, 본국신분증

02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개설 시점에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중 1개 징구

* 증빙서류 예시

거래목적	증빙서류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합격증,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명세서, 명함+사원증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금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서 등

※ 증빙서류 미비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

〈금융거래 한도계좌〉

- 대상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금융회사 별 1인당 1계좌)
- 금융거래의 범위 및 한도 (거래종류 별 1일 거래한도)

거래 구분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전자금융
1일 거래 한도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지정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만 거래(인출/이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 이후 금융거래 목적 확인 시 거래한도 해제하여 거래 가능

☎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보고 서류

① 한국 거주자로 기재하는 경우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거주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과 183일 이상 거주사실 가능 서류 (예: 출입국관리기록) 등

② 본인확인서에 해외 거주자로 기재하는 경우: 해외 납세자번호, 해외주소, 해외연락처 필요

(증빙서류)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 정부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 서류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 서류

01 신분증 - 여권, 본국신분증

02 거소확인 증빙서류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KYC(고객확인제도)가 의무이며,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인 주소는 여권으로 확인이 어려워 거소확인 증빙서류*를 추가 징구

* 거소지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공과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호텔 바우처, 병원 예약 내역 등 주소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중 1개

참고사항

- 호텔 바우처를 제시하면 호텔 주소 사용이 가능한지 방문 은행 지점에 확인 필요
- 공장 합숙소 등 실제 회사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 주소 작성 가능

03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개설 시점에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중 1개 징구

* 증빙서류 예시

거래목적	증빙서류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합격증,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명세서, 명함+사원증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금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서 등

※ 증빙서류 미비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

04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보고 서류

① 한국 거주자로 기재하는 경우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거주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과 183일 이상 거주사실 가능 서류 (예: 출입국관리기록) 등

② 본인확인서에 해외 거주자로 기재하는 경우: 해외 납세자번호, 해외주소, 해외연락처 필요

(증빙서류)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 정부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 서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자의 은행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고자 참고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은행 및 지점별로 증빙서류 인정 여부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은행 지점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영문상담이 가능한 지점 및 핫라인 예시

1. 영문상담 가능지점

구분	지점	주소	비고
신한은행 (디지털 화상 상담 센터)	디지털라운지(서울대입구역)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2, 관악프라자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능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필요) * 고객명 24Bytes초과시 일부업무 불가 · 업무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고객신규(여권 지참 필수) 2. 통장, 체크카드, 온라인뱅킹 신규 3. 정기예금, 적금, 청약 신규 4. 제신고(한도제한 해제, 비밀번호 변경 등) 5. 출력업무(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디지털라운지(고척사거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0, 1층	
	한양대학교지점(9월 이후)	서울 성동구 마지로 22-2,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부천역지점(9월 이후)	경기 부천시 부일로 464, 태강캐슬오피스텔 3층	
	성남지점(9월 이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0, 교보빌딩 1층	
우리은행	강남글로벌투자WON센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광화문글로벌투자WON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서울파이낸스센터) 20층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0, 석천빌딩(1층,2층)	
	이태원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45(이태원동, 동호프라자)	
	서울InternationalPB센터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3층(역삼동,아가방빌딩)	

2. 영문상담 핫라인(외국인전용 콜센터 등 운영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고객센터 1566-1566, 1588-2588 → 서비스코드 571 입력	고객센터 1661-3000 → 버튼식 ARS(1번) → 서비스코드 730입력 *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역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인전용 콜센터 1577-8380 해외발신용 +82-02-3449-8380	외국인전용 콜센터 1599-2288	외국인전용 콜센터 1599-6111